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3. 9.

금 융 위 원 회

1.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 [안 제2조 제5호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적용범위를 명확화 하고자 함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(개인 및 법인)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역외 대부행위는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잠재적 위법소지를 해소함으로써,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게 양도 허용 [안 제6조의4 제6호]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법인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의 해외 양도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별한 논의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